

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4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1. . 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선심지원 및 특혜차단을 위해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, 자치단체 계약의 공정성 제고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예규와 자치법규 등의 금고선정 관련 불합리한 수의계약 사유에 대한 정비를 권고함에 따라,
-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금고선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명확히 명시하여 금고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수의계약 가능 조항 삭제(제2조제1항제4호 규정)
 -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특정 은행 지정 가능 조항 삭제
-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정비(제3조제2항 규정)
 - ① 주요 경영지표 현황 중 BIS 자기자본 비율 점수 조정 : 9점 ⇒ 7점
 - ② 군민 이용의 편의성 항목
 - 군내 지점 현황 및 군민 이용 편의성 항목 점수 조정 : 5점 ⇒ 6점
 -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항목 점수 조정 : 9점 ⇒ 5점
 - 군내 중소기업 대출실적 및 계획 항목 신설 : 3점 배정
 - ③ 금고업무 관리 능력 중 전담조직운영계획 추가 및 OCR센터 운영 실적 항목 점수 조정 : 5점 ⇒ 3점
 - ④ 배점기준 정비
 - 세부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방법 명시
 - 금고 선정 평가 시 자의적 배점 및 평가에 대한 논란 제거
 - ⑤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⇒ 조례안 별표 참조

○ **군 금고 계약 기간 조정(안 제2조제3항)**

-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1년 연장

(타시군과 형평 조정 및 금고 운영의 효율성 제고)

○ **군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정(안 제3조제1항)**

- 금고선정 심의당시 도출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입법예고 : 2011. 7. 4 ~ 2011. 7. 25(21일간 실시) : 의견없음

라.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 표]

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(제3조제2항 관련)

I. 총괄

(단위 : 점)

평가항목	배점	비고
총계	100	
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	33	
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	10	
㉠ 국외 평가기관 평가	6	
㉡ 국내 평가기관 평가	4	
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	23	
㉠ BIS 자기자본 비율	7	
㉡ 무수익 여신 비율	7	
㉢ 자기자본 이익률	6	
㉣ 대손 총당금 적립율	3	
2. 군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	18	
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	6	
나. 공공예금 예치금리	5	
다. 군에 대한 대출금리	4	
라. 수시 입출금 예치금리	3	
3. 군민 이용의 편의성	19	
가. 군내 지점 현황 및 군민 이용 편의성	6	
나.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	5	
다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	5	
라. 군내 중소기업 대출실적 및 지원계획	3	
4. 금고업무 관리 능력	20	
가. 세입·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	5	
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	5	
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	5	
라. 금고업무 전담조직 운영계획, OCR센터 운영실적 등	5	
5. 지역사회 기여 및 도 협력사업 추진 능력	10	
가.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계획	5	
나. 군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	5	

II. 세부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방법

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(33점)

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(10점)

㉠ 국외 평가기관 평가(6점)

- 대표적 국제 신용조사기관인 무디스(Moody's), 애스앤피(S&P), 피치(FITCH) 중 해당 금융기관이 제출한 조사기관의 평가서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

배 점	등 급 별 배 점				비고
	최고등급	상위등급	보통등급	요주위등급	
6.0점	6.0점	5.5점	5.0점	4.5점	

㉡ 국내 평가기관 평가(4점)

- 대표적 국내 신용조사기관인 한국신용정보, 한국기업평가, 한국신용평가 중 해당 금융기관이 제출한 평가서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

배 점	등 급 별 배 점				비고
	최고등급	상위등급	보통등급	요주위등급	
4.0점	4.0점	3.5점	3.0점	2.5점	

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(23점)

-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공시자료에 따라 평가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자료와 비교·확인

㉠ BIS 자기자본 비율(7점)

배 점	비 율 별 배 점					비고
	10%이상	9%이상~10%미만	8%이상~9%미만	7%이상~8%미만	7%미만	
7.0점	7.0점	6.5점	6.0점	5.5점	5.0점	

㉡ 무수익 여신 비율(7점)

배 점	비 율 별 배 점					비고
	0.7%미만	0.7%이상~0.8%미만	0.8%이상~0.9%미만	0.9%이상~1%미만	1% 이상	
7.0점	7.0점	6.5점	6.0점	5.5점	5.0점	

㉔ 자기자본 이익률(6점)

배 점	비 율 별 배 점					비 고
	20%이상	16%이상~ 20%미만	12%이상~ 16%미만	8%이상~ 12%미만	8% 미만	
6.0점	6.0점	5.5점	5.0점	4.5점	4.0점	

㉕ 대손 충당금 적립율(3점)

배 점	비 율 별 배 점					비 고
	150%이상	140%이상~ 150%미만	130%이상~ 140%미만	120%이상~ 130%미만	120% 미만	
3.0점	3.0점	2.7점	2.4점	2.1점	1.8점	

2. 군에 대한 예금·대출금리(18점)

가. 정기에금 예치금리(6점)

배 점	순 위 별 배 점 표					비 고
	1순위	2순위	3순위	4순위	5순위	
6.0점	6.0점	5.5점	5.0점	4.5점	4.0점	

나. 공공예금 예치금리(5점)

배 점	순 위 별 배 점 표					비 고
	1순위	2순위	3순위	4순위	5순위	
5.0점	5.0점	4.5점	4.0점	3.5점	3.0점	

다. 군에 대한 대출금리(4점)

배 점	순 위 별 배 점 표					비 고
	1순위	2순위	3순위	4순위	5순위	
4.0점	4.0점	3.6점	3.2점	2.8점	2.4점	

라. 수시 입출금 예치금리(3점)

배 점	순 위 별 배 점 표					비 고
	1순위	2순위	3순위	4순위	5순위	
3.0점	3.0점	2.7점	2.4점	2.1점	1.8점	

3. 군민 이용의 편의성(19점)

가. 군내 지점 현황 및 군민 이용 편의성(6점)

배 점	순 위 별 배 점 표					비고
	1순위	2순위	3순위	4순위	5순위	
6.0점	6.0점	5.5점	5.0점	4.5점	4.0점	

나.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(5점)

배 점	순 위 별 배 점 표					비고
	1순위	2순위	3순위	4순위	5순위	
5.0점	5.0점	4.5점	4.0점	3.5점	3.0점	

다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(5점)

배 점	순 위 별 배 점 표					비고
	1순위	2순위	3순위	4순위	5순위	
5.0점	5.0점	4.5점	4.0점	3.5점	3.0점	

라. 군내 중소기업 대출실적 및 지원계획(3점)

배 점	순 위 별 배 점 표					비고
	1순위	2순위	3순위	4순위	5순위	
3.0점	3.0점	2.7점	2.4점	2.1점	1.8점	

4. 금고업무 관리 능력(20점)

가. 세입·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(5점)

배 점	순 위 별 배 점 표					비고
	1순위	2순위	3순위	4순위	5순위	
5.0점	5.0점	4.5점	4.0점	3.5점	3.0점	

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(5점)

배 점	순 위 별 배 점 표					비고
	1순위	2순위	3순위	4순위	5순위	
5.0점	5.0점	4.5점	4.0점	3.5점	3.0점	

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(5점)

배 점	순 위 별 배 점 표					비고
	1순위	2순위	3순위	4순위	5순위	
5.0점	5.0점	4.5점	4.0점	3.5점	3.0점	

라. 금고업무 전담조직 운영계획, OCR센터 운영실적 등(5점)

배 점	순 위 별 배 점 표					비고
	1순위	2순위	3순위	4순위	5순위	
5.0점	5.0점	4.5점	4.0점	3.5점	3.0점	

5. 지역사회 기여 및 군 협력사업 추진능력(10점)

가.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계획(5점)

배 점	순 위 별 배 점 표					비고
	1순위	2순위	3순위	4순위	5순위	
5.0점	5.0점	4.5점	4.0점	3.5점	3.0점	

나. 군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(5점)

배 점	순 위 별 배 점 표					비고
	1순위	2순위	3순위	4순위	5순위	
5.0점	5.0점	4.5점	4.0점	3.5점	3.0점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금고지정) ①군수는 군 관 내에 본점 및 지점을 둔 금융기 관을 대상으로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평창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 방법으로 지 정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4. <u>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 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</u></p> <p>② · ③ (생 략)</p>	<p>제2조(금고지정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법령 발취 및 참고자료

□ 지방재정법

◆제77조(금고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은행법」에 의한 은행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, 시·도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, 시·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·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
③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재정법시행령

◆제102조(금고업무의 약정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융기관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하여야 하며, 당해 금융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·규칙이 정하는 금고로서의 모든 의무와 그 약정한 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②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는 금융기관의 금고업무취급능력, 주민이용편의 및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
(참고자료 1)

국민권익위원회 평가자료

◆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선심 지원 및 특혜 차단을 위한 부패영향평가

(참고자료2)

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

◆행정안전부예규 제244호(2009. 6. 10. 제정)